

# 이 사 회 규 정

2018 . 5 . 2

HDC현대산업개발

#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이사회규정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4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회사운영의 기본방침 및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회회장, 대표이사 및 주요 경영진을 선임하며, 이사 및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 제2장 구 성

**제4조 (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정관 제 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 (의장)** 이사회의 의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32조의2 규정에 따른다.

## 제3장 회 의

**제6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격월로 본사에서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단, 제10조의 부의사항 및 이사회에 대한 보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임시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7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이사회 의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권자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소집권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정기이사회는 1주일 전일까지, 임시이사회는 회일 전일까지 각 이사에 게 개최시기, 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할 수 있다.

**제8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이 직접투자를 위해 이사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4분의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경영진, 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상법상의 의결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의 승인
  3.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승인
  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5. 공동대표의 결정
  6. 지점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7. 신주의 발행
  8. 사채의 발행
  9. 준비금의 자본전입
  10.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 이사의 경업 및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와 승인
  12. 이익잉여금의 중간배당
  13. 이사회내 위원회 설치 및 이사회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4. 삭제 (2001.5.29)

15.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6.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의 재결의

17.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 소각 결정

② 회사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1. 사업의 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예산·결산

3. 통상적인 상거래행위 범위를 넘는 차입, 채무의 보증, 주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주요 신규투자계획

5. 해외증권의 발행

③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1. 영업의 전부,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3. 영업전부의 양수

4. 주식배당

5. 자본감소

6. 정관변경안

7. 이사의 보수안

8. 이사의 선임 및 해임

9. 회사의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10. 주식의 액면미달의 발행

1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2.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안건

④ 기타 법령 또는 정관, 주주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 (긴급집행)**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사전 집행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가 긴급집행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조치는 장래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제12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내 위원회 결의로서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 또는 소위원회에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 제13조 (삭제)

**제14조 (경영진)** ① 정관 제32조의3에 의거 회사는 이사회 결의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둔다.

② 경영진은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경영진은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로 구분하며 회장, 부회장, 사장을 최고경영자라 칭하고 경영진은 이사회 이사가 될 수 있다.

④ 경영진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최고경영자가 정한다.

⑤ 각 경영진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될 수 있다.

⑥ 경영진의 급여, 퇴직금 및 상여금과 업무상 필요한 제경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정한다.

⑦ 회사의 설립과 경영, 기술혁신 등에 현저히 기여한 경영진에 대한 별도의 경영성과급지급기준을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⑧ 경영진은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이사에 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 및 경영진이 담당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담당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경영정보에 대한 기밀을 유지하며, 회사의 기밀을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 사전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경영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 사전 승인이 없는 한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할 수 없다.

④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7조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하는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의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회 지원)** 회사는 이사회에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수집 등의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사회 부속실을 운영하거나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다.

## 제4장 이사회내 위원회제도

**제19조 (이사회내 위원회제도)** ① 이사회는 정관에 의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추가로 회사 경영전략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에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없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기타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

③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 결의로 정한다.

④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에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위원회)** ①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사외이사로 구성한다. 단, 결원으로 인해 사외이사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상법 제393조의2 제5항에 따르고, 본 규정을 준용한다. 단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21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이사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②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단, 사외이사 후보는 상법 제382조 제3항 및 동법 제542조의8 제2항에 의한 사외이사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③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④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20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